

충청북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
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충청북도의회
산업경제위원회

충청북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
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23년 3월 7일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3월 9일

3. 제안이유

가. 미래자동차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중장기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근거를 마련하고,

나. 육성 및 지원사업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미래자동차산업육성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위해 비상설하려는 것임

4. 주요내용

가.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(안 제3조)

나. 미래자동차산업 육성계획(5년) 및 시행계획(1년) 수립·시행(안 제4조)

다. 미래자동차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·구성·운영 등(안 제5조 ~ 안 제8조)

라.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사업 추진 및 사업지원(안 제9조 및 안 제10조)

마. 수탁자등에 대한 지도·감독(안 제11조)

5. 검토의견 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복순)

가. 제출배경

- 현행 조례는 미래의 자동차산업이 기존 내연기관에서 스마트카로 산업구조가 급변화됨에 따라 지역 자동차산업 생태계의 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발굴·지원하여 충청북도 내 미래 자동차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2020년 4월 10일 제정되었음
- 미래자동차산업은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산업으로 고부가가치 자동차기술의 개발과 자동차산업의 고도화 등 충청북도 미래자동차산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육성·지원할 필요성이 있음
- 조례 시행과정에서 위원회 운영 등과 사업추진에 있어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, 전부개정을 통해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

나. 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

- 이 조례안은 본칙 15개 조항과 부칙 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
- 안 제5조는 ‘위원회 설치 및 구성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
 - 제1항과 제2항에서 위원회의 명칭을 현행 ‘자동차산업육성위원회’에서 ‘미래자동차산업육성위원회’로 변경하였고, 위원회의 위원도 1명이 증가한 11명으로 조정함

- 제3항과 제5항에서 위원장을 경제부지사에서 **과학인재국장**으로, 부위원장을 호선에서 **업무 담당 과장**으로, 제4항에서 간사를 업무담당 과장에서 **소속 공무원**으로 ‘**격하**’ 한 것과 위원회를 안건이 있을 때만 구성하고 심의·자문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하도록 한 것은 관(官) 주도의 비상설기구로 운영하려는 것임
- 이것은 경제부지사가 위원장이 되는 각종 위원회가 과다하고, 실질적이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 등을 위해 비상설 기구로 전환하려는 것은 설득력은 있으나,
- 미래자동차산업의 특성상 민간의 기술력과 경험 등 민간 전문가 등의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되는 현실에서 민간주도가 아닌 관 주도의 위원회 운영은 획일화되고, 경직된 운영 등이 우려되어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며, 관련 부서의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

○ 안 제6조는 ‘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’에 관한 사항으로,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9조제1항과 비교할 때, 안 제6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제척 등의 사유를 제1호에서는 강화한 반면, 제3호에서는 완화하였음

- 제3호에서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한 증언, 감정 외에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을 삭제하여 제척·기피·회피 조건을 완화한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

다. 종합의견

- 자동차산업은 이미 첨단기술이 결합한 미래자동차(전기차, 자율주행차, 친환경차 등)로 산업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고 미래자동차 산업은 충북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사업 중 하나로 차세대 자동차 부품, 스마트 전장부품, 친환경 동력부품 등의 핵심분야를 더욱 육성하고 지원해야 할 것임
- 이 조례안은 미래자동차산업의 체계적인 육성·지원을 위한 육성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·시행과 미래자동차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등 위원회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, 각종 육성사업의 추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려는 것으로,
- 미래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례의 전부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, 조례안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
- 다만, 위원회 구성을 현행 조례와 비교했을 때 ‘격하’한 것,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 앞서 지적한 사항들에 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, 이에 대한 관련 부서의 보편·타당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